

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0. 2. 20.>

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(제11조 관련)

1.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

가.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

구분 \ 항목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BOD, mg/L)	화학적 산소요구량 (COD, mg/L)	총유기 탄소량 (TOC, mg/L)	부유 물질량 (SS, mg/L)	대장균 군수 (개/ml)	총질소 (T-N, mg/L)	총인 (T-P, mg/L)
공공처리시설	30 이하	50 이하	55 이하	30 이하	3,000 이하	60 이하	8 이하
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	30 이하	50 이하	55 이하	30 이하	3,000 이하	60 이하	8 이하

나.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

구분 \ 항목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(BOD, mg/L)	총유기 탄소량 (TOC, mg/L)	부유 물질량 (SS, mg/L)	대장균 군수 (개/ml)	총질소 (T-N, mg/L)	총인 (T-P, mg/L)
공공처리시설	30 이하	55 이하	30 이하	3,000 이하	60 이하	8 이하
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	30 이하	55 이하	30 이하	3,000 이하	60 이하	8 이하

2.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

지역 \ 항목	구분	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	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
특정 지역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, mg/L)	40 이하	120 이하
	총유기탄소량 (TOC, mg/L)	120 이하	200 이하

	부유물질량(SS, mg/L)	40 이하	120 이하
	총질소 (T-N, mg/L)	120 이하	250 이하
	총인 (T-P, mg/L)	40 이하	100 이하
기타 지역	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, mg/L)	120 이하	150 이하
	총유기탄소량 (TOC, mg/L)	200 이하	250 이하
	부유물질량 (SS, mg/L)	120 이하	150 이하
	총질소 (T-N, mg/L)	250 이하	400 이하
	총인 (T-P, mg/L)	100 이하	100 이하

#### 비고

1.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.
2.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 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.